붙임 2 **채용가점 근거**

❑ 채용가점 근거

❍ 법령가점

구 분	가 점	근 거
법령가점	만점의 5% 또는 10%	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		*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		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
		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
		*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		*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채용시험의 가점)

❍ 특별가점

구 분	가 점	근 거
장애인	만점의 10%	*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(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)

※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점 부여 결정